

## 안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### □ 세부유형 : 안면장애

| 구비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노출된 안면부*의 장애상태** 및 면적 등 진단 소견 기재</li> <li>* 전두부와 측두부,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, 귀, 목의 앞면 포함</li> <li>** 눈에 띄는 면상반흔, 색소침착, 탈색소질환, 모발결손(반흔 동반) 조직의 비후나 함몰, 결손</li> </ul>            |
| 2. 검사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근 칼라사진 :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얼굴, 이마, 목, 귀가 보이는 정면, 좌측, 우측 각 1장 이상, 최소 3장 필수 제출(A4용지 크기)</li> </ul> </li> <li>- 함몰이나 비후 : 단순 x-ray, CT, MRI 등 영상의학검사</li> </ul> |
| 3. 진료기록지<br>※ 재판정 대상은<br>발병 당시 기록지 제출 불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과기록지, 입퇴원요약지, 수술기록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최근 또는 발병 시부터 6개월간의 기록지</li> </ul> </li> <li>※ 원인상병(진단명)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<br/>(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, 보완자료 제출이 필요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<u>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·제출하셔야 합니다.</u></p>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<b>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</b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료기관의 성형외과, 피부과 또는 외과(화상의 경우) 전문의</li> <li>- 의료기관의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(구강악안면외과)</li> </ul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최저 장애정도 기준

- 코 형태의 1/3 이상이 없어진 사람
- 노출된 안면부의 45%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
- 노출된 안면부의 30% 이상이 변형된 사람

## 장애인 등록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

### □ 장애인 등록

정확한 장애인 등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장애심사를 실시합니다.



- 장애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, 소견서, 진료기록,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.
- 제출된 심사자료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- 희망 시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발급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(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)

### □ 이의신청

장애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, 관련 절차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.



-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(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 제1항) 합니다.
- ‘이의신청서’ 양식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,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자문회의를 구성합니다.
-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(시·도 행정심판위원회) 또는 행정소송(행정법원)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단,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 가능